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제20130100453호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3년 06월 07일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년 05월 28일

하 이 스투 학 원

정 보 공 개 서

(주)타임교육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42, 지상3층~12층(삼성동, 75th Avenue)

[전화번호] 본사: 02-590-6900, 가맹사업부: 1577-6167

[팩스번호] 본사: 02-590-6957, 가맹사업부: 02-590-6957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 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주)타임교육	하이스트학원 외 4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42, 지상3층~12층(삼성동, 75 th Avenue)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1.11.01	2011.11.01.	이동진	1577-6167	02-590-6957
	법인등록번호	110111-4719922	사업자등록번호	206-86-58900	

※ 당사는 2016년까지 3월 결산법인 이었으나 2017년부터 12월 결산법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사용브랜드	주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대표이사	이동진	하이스트 외 4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42, 지상3층~12층(삼성동, 75th Avenue)		
			이동진	1577-6167	590-6957
사내이사	허용석	하이스트 외 4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42, 지상3층~12층(삼성동, 75th Avenue)		
			이동진	1577-6167	590-6957
사내이사	전우석	하이스트 외 4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42, 지상3층~12층(삼성동, 75th Avenue)		
			이동진	1577-6167	590-6957
기타 비상무이사	김은애	하이스트 외 4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42, 지상3층~12층(삼성동, 75th Avenue)		
			이동진	1577-6167	590-6957
기타 비상무이사	김한수	하이스트 외 4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42, 지상3층~12층(삼성동, 75th Avenue)		
			이동진	1577-6167	590-6957
감사	임정근	하이스트 외 4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42, 지상3층~12층(삼성동, 75th Avenue)		
			이동진	1577-6167	590-6957

3.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하이스트학원	-
상 호	하이스트학원 OO점	-
상 표		상표 등록번호: 제4101824150000호 (2009.0309 등록)

4.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주)미래영재아카데미	미래GT아카데미	2022.02.11.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75, 9층 1002호	이창학

[※ 『미래GT아카데미』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상태이며, 가맹사업을 전개하지 않습니다.]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69,928,002	24,799,338	45,128,663	117,910,863	10,554,262	7,075,192
2023년	75,100,136	23,688,039	51,412,097	127,654,228	7,283,847	6,304,690
2024년	77,958,462	23,356,544	54,601,917	133,225,250	9,053,324	3,208,946

[※ # 별첨 1에 첨부된 당사 재무상황에 있어서 2022/2023년 손익계산서와 2021/2022 손익계산서상 매출액과 영업이익 금액에 차이가 있는바, 이는 당사가 2023년 3월 3일 이사회결의에 따라 일부사업의 영업중단을 결정하고 영업을 중단하였으며, 금액의 차이는 중단사업 관련하여 공시된 재무제표 상 중단사업손실로 재분류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 별첨 1에 첨부하였습니다.]

[※ 당사의 재무상황에 관한 근거자료는 # 별첨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이동진	대표이사	2010.06.28. ~2014.06.25.	(주)타임교육 (현 (주)타임컨텐츠) 이사	경영지원
			2014.06.26.~현재	(주)타임교육 이사	회사업무총괄
	허용석	사내이사	2015.06.26.~현재	(주)타임교육 이사	경영지원
	전우석	사내이사	2015.06.26.~현재	(주)타임교육 이사	경영지원
	김은애	기타비상무이사	2021.07.30.~현재	(주)타임교육 이사	경영지원
	김한수	기타비상무이사	2023.03.31.~현재	(주)타임교육 이사	경영지원
	임정근	감사	2021.04.30.~현재	(주)타임교육 감사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 12. 31.	3	3	402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하이스트학원]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경영 하였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타임교육	동일업종의 가맹사업 경영	2011.11 ~ 현재	뉴스터디교육(등록번호: 20090100111)라는 브랜드의 교육사업 경영
				소마사고력수학(등록번호: 20100100398)라는 브랜드의 교육사업 경영
				이엘씨어학원(등록번호: 20090300029)이라는 브랜드의 교육사업 경영
			2020.09 ~ 현재	엘란어학원(등록번호: 20200689)이라는 브랜드의 교육사업 경영
			2021. 11. ~ 2025.05.07. -자진취소	NS AI 수학(등록번호: 20214447)이라는 브랜드의 교육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일자	등록번호	상표권자	등록만료일
	해당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2009.3.9.	4101824150000	(주)타임교육	2029. 3. 9.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하이스트학원]을 시작한 날: 2013. 6. 23.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11년 11월)

2. 하이스트학원의 연혁

가맹본부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주)타임교육	하이스트 학원	이동진	2013.6.23.~2019.07.24.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10 (성수동2가, 푸조비즈타워 5층)
			2019.07.25.~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42, 지상3층~12층(삼성동, 75th Avenue)

3. 하이스트학원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하이스트학원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교육(교과)	교과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 12. 31.			2023. 12. 31.			2024. 12. 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3	12	1	10	10	-	8	8	-
서울	3	2	1	2	2	-	2	2	-
부산	-	-	-	-	-	-	-	-	-
대구	1	1	-	-	-	-	-	-	-
인천	3	3	-	2	2	-	1	1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경기	5	5	-	5	5	-	4	4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1	1	-	1	1	-	1	1	-
세종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최근 3년간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년	13	0	0	1	0	12
2023년	12	0	1	1	0	10
2024년	10	0	0	2	0	8

6.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하이스트를 제외하고 [5]개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본부	(주)타임 교육	ELC어학원	20090300029	교육	13/0	13/0	9/0
		뉴스터디	20090100111		81/1	79/1	69/1
		소마사고력수학	20100100398		162/16	170/16	166/16
		엘란어학원	20200689		0/1	0/1	0/1
		NS AI 수학	20214447		0/0	0/0	0/0

7. 하이스트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 제외)과 그 산정기준

『하이스트』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4년에 올린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상기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가맹점의 수강료 매출액을 기재한 것입니다.]

[상기 표에는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사용 하였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학생 수,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본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하이스트』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하이스트』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8	2,968일(약 8.13년)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하이스트』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4 『하이스트』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	-	2,184,417	2,184,417	-	-
(비공개)	(비공개)	연중	(비공개)	(비공개)	-	-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	-

※ 상기 광고·판촉 지출 내역은 (주)타임교육 손익계산서 상의 광고 선전비 및 판매촉진비를 기재한 것이며, 당사의 브랜드인 뉴스터디, ELC, 소마사고력수학, 하이스트, 엘란어학원의 전체 광고/판촉 비용이며, 광고/판촉 수단별 세부적인 금액과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워 상기와 같이 기재하였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기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예치 의무가 없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주)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주)서울보증보험	-
피보험인(보험계약자)	(주)타임교육	가맹본부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학원사업자	-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학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
보험금액	예치금액	-
보장범위	가맹학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예치금 범위 내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학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 5개월 소요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 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조치일자	조치내용
(주)타임교육	-	-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불이행	2023.03.17.	정보공개서 (미래GT아카데미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110100126) 직권취소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  하이스트 』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과 직원채용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주)타임교육	예치대상(보험가입으로 대체)	확정금액
계약이행보증금		예치대상(보험가입으로 대체)	확정금액
기타 비용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최초가맹금 내역		금액	포함내역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 맹 비	입회비	각 호의 비용	가맹학원운영권 부여에 대한 대가	가맹계약과 동시	계약 체결 후 4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모두 반환 안됨	가맹학원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소멸성 대가
	오픈영업 지원비	[3,300]	가맹학원 오픈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 파견 비용	가맹계약과 동시	가맹학원 오픈 이후 반환 안됨	가맹학원 오픈을 지원하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소멸성 대가
	영업표지 사용비	[3,300]	"갑"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기 위한 대가	가맹계약과 동시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초도물품비		[4,400]	초도물품 대한 대가	가맹계약과 동시	초도물품 미수령한 경우	초도물품 개봉 후 재사용불가
개원전 교육비		[5,500]	가맹학원개설 및 운영과 영업활동에 관한 교육비	가맹계약과 동시	교육시작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	본사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계		[17,600] ~ [55,000]				

상기 입회비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1. 수도권/광역시/중소도시 SS급지 - 금 삼천팔백오십만원(₩ 38,500,000)
2. 수도권/광역시/중소도시 S급지 - 금 이천이백만원(₩ 22,000,000)
3. 수도권/광역시/중소도시 A급지 - 금 일천일백만원(₩ 11,000,000)

4. 중소도시 B급지 - 금 오백오십만원(₩ 5,500,000)
 5. 군단위 C급지 - 금 일백십만원(₩ 1,100,000)

2) 계약이행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학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합계]	[5,000]			
계약이행보증금	[5,000]	계약체결과 동시	물품 대금이나 로열티, 손해배상액 등의 미지급	해지 및 종료 시 정산 후 반환 / 지급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가맹학원 유형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합 계	[22,600~60,000]	-
최초가맹금	[17,600~55,000]	부가세 포함
계약이행보증금	[5,000]	부가세 없음 / 지급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

4) 기타비용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사항을 자세히 나누면 가맹학원 유형별로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333 m²기준)

구 분	지급대상	지급기한	반환조건	금 액	3.3m ² 당 비용	비고
[합 계]	[97,000]					
인테리어 (학원내장공사)	자체시공	-	-	[66,000]	[660]	※당사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시설되어야 합니다.
간판 등		-	-	[11,000]	[110]	간판, 사인물, 홍보물 등
설비/기기/가구	자체시공	-	-	[20,000]	[200]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학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비용은 설비의 품질, 선택사항에 대한 추가 및 점포 건물에 따른 냉난방기, 철거, 소방설비, 음향기기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생 통학용 차량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5) 가맹학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학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학원사업자	1)가맹학원사업자의 판단과 책임으로 가맹학원의 입지를 조사·선정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는 해당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상권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인근 가맹학원의 영업지역 등을 고려하여 가맹학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 3)가맹본부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학원사업자 게 있습니다. 4) 가맹학원사업자의 가맹학원 개원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의 준비나 상가규약 등의 확인은 가맹학원사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6) 가맹학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학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학원사업자	각 지역 교육청 기준에 준함	성 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 없는 자
강 사	각 지역 교육청 기준에 준함	성 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 없는 자

7) 가맹학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  HIST 』 가맹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금 액	지급대상	지급기한	반환조건	불반환 사유	비고
특별교육비	해당교육 교재비 및 실비청구	(주)타임교육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3일 이내	교육 시작 전 교육이 취소된 경우	본사의 노하우 제공	-
광 고 비	전체광고 시 총광고비용 중 가맹본부부담액 50%제 외 금액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광고활동이 취소된 경우	광고활동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
판 측 비	1)공동판촉시 기획비용은 본사부담, 제작비용은 가 맹학원사업자부담 2)개별판촉시 가맹학원사 업자가 비용부담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판촉활동이 취소된 경우	판촉활동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
로 열 티	월 수강료 매출액의 6%		매월 10일	반환 안됨	교재/노하우 제공	-
지연이자	연 20%		연체일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	-	본사에 지급할 비용을 연체했을 경우 부담
점포환경 개선비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정	-	-	-	PART VII. 참조

※ 전국단위 광고에 소요되는 총비용 중 가맹학원사업자간 부담 비율은 동일하고, 전국단위 판촉에 소요되는 총비용 중 가맹학원사업자간 부담 비율은 본인에게 제공되는 판촉물 부수 내지 개수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됩니다.

※ 가맹학원사업자가 개별광고 내지 개별판촉을 하고자 할 경우 당사는 가맹학원사업자가 실시하고자 하는 개별광고 내지 개별판촉을 기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가 광고 내지 판촉을 기획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학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당사는 전년도 차액가맹금 관련하여 자체제작 등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구분(기준: 2024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사항 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3) 가맹학원사업자에 대한 재고관리 및 회계처리 감독

당사는 가맹학원사업자의 가맹학원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기적 또는 부

정기적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독 항목	내용	시기	비고
캠퍼스 운영실태	신규, 재등록, 성장 추이	1회 / 월	사업팀
	프로그램 운영 지침 준수 여부	1회 / 분기	교육팀
	시설 및 교육 환경 점검	1회 / 반기	사업팀
광고, 홍보 현황	전단지, 현수막, 유선tv 등	부정기적	사업팀
월간 일정	전반적인 캠퍼스 운영	월 1회	사업팀
기타	캠퍼스 운영/교육 전반	부정기적	협조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학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  **히이스트** 』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는 양도예정일 2개월 전에 가맹학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가맹학원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학원사업자가 당사의 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맹학원사업자가 당사의 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승인 통지를 하거나 승인 여부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가맹사업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사와 양수인 간의 가맹사업 거래관계는 그대로 양수인과 가맹학원사업자 간에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일, 가맹학원사업자가 당사의 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승인 거부 통지를 한 경우에는 가맹사업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사와 가맹학원사업자간의 가맹사업 거래관계는 종료되며, 당사는 가맹사업의 양도일 전일까지 가맹금 중 일부를 가맹학원사업자에게 반환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가맹학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락한 상표의 등록이후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변경, 효력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체수단을 가맹학원사업자에게 제공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 **히이스트** 』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  **히이스트** 』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학원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것이며, 이로 인해 가맹학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학원사업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가맹학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  히이스트 』 가맹학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 가맹학원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부담할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양수인이 양도인의 권리를 승계할 경우

양수인은 영업 양도일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영업표지 사용비와 전액의 개원전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은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② 양수인이 신규 가맹계약 체결을 원할 경우

(단위: 천원)

내 용	금 액	
[합 계]	[22,600~60,000]	
최 초 가 맹 금	[17,600~55,000]	부가세포함
계약이행보증금	[5,000]	부가세없음 / 지급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

3)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  히이스트 』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기호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계약 종료 후 15일 이내에 갑이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 관련 자산을 당사에 반환하고, 운영매뉴얼 기타 가맹학원 운영 규범 등은 당사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하가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주)타임교육』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등으로 인하여 종료한 때, 가맹학원사업자는 공급된 교재, 교구 등 중에서 파손, 변질 등이 되지 아니한 완전물을 당사에 반환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당사는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상환가를 정합니다. 다만, 가맹학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반품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품목: 상품, 원/부자재 등]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  하이스트 』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  하이스트 』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2) 당사가 『  하이스트 』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학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하이스트 표준수업프로그램	각 가맹학원별 동일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타임교육 제공프로그램 및 교재만 사용	1회 위반 : 구두 경고 2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 계약 해지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으며, 당사가 개발한 신메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 외에 타 가맹학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거래상대방	비고
하이스트 학원생	당사가 공급한 교재, 교구 및 용역	하이스트 학원생 이외의 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거래상대방에게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학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학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은 지역 교육청의 고시기준에 의거 가맹점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천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교재류	권장소비자가격	본사 개별통보	-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보습학원	하이스트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행정단위인 00시 00구 00동(행정단위인 "동"이 없는 경우는 "면"으로 한다.) 단위로 함. 단, 다음에 해당될 경우 인근 가맹학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협의로 정할 수 있음 1. 철길, 왕복 8차선 이상의 도로 등의 지형, 지물에 의해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2. 주거지역으로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3. 위 1., 2. 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별첨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학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원생 모집 및 원생 모집을 위한 판촉·홍보활동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학원사업자가 다른 가맹학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학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학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학원사업자가 다른 가맹학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하이스트』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학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하이스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당사는 상기의 기재사항 외, 영업지역 관련 영업방침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하이스트 가맹사업의 최초 계약기간은 2 년입니다. 재계약 또는 갱신 시 기간은 1 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가
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
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학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학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학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학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학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하였습니까?	D-60일 이전

예→E, 아니오→A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금이나 물품대금 등의 금전지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제2항 제1호
○ 다른 가맹학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제2항 제2호
○ 가맹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학원·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8조 제2항 제3호 가목
○ 본사가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재, 교수법 또는 기타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8조 제2항 제3호 나목
○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8조 제2항 제3호 다목
○ 가맹학원사업자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다만, 가맹학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제8조 제2항 제3호 라목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의 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학원의 표시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7조 제1항 본문
○ 영업표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범위 외에 본사의 서면 동의 없이 소모품 및 비품을 인쇄하거나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37조 제1항 본문
○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제37조 제1항 본문
○ 점포환경개선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7조 제1항 본문
○ 물품 등의 대금의 결제를 3회 연속 지연한 경우	제37조 제1항 본문
○ 자점매입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7조 제1항 본문
○ 가맹계약서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휴업하는 경우	제37조 제1항 본문
○ 영업의 표준화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7조 제1항 본문

○ 교육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제37조 제1항 본문
○ 감독 및 통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7조 제1항 본문
○ 가맹점의 설비 및 기기에 대해 미비점이 발견되어 시정 조치 요구를 받고도 3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37조 제1항 본문
○ 정당한 사유 없이 전국단위 광고 또는 판촉에 불참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제37조 제1항 본문
○ 가맹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도록 정상적인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제37조 제1항 제1호
○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제37조 제1항 제2호
○ 당 사업의 커리큘럼에 맞는 교재 및 제반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37조 제1항 제3호
○ 납부할 각종 비용이 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1년 안에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제37조 제1항 제4호
○ 본사의 동의 없이 수강료를 변경하거나 반 구성 형태 및 운영방식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제37조 제1항 제5호
○ 주문한 교재량과 실제 원생수가 10%이상 차이가 날 경우	제37조 제1항 제6호
○ 본사의 서면승인 없이 양도 등을 한 경우	제37조 제1항 제7호
○ 가맹계약서 제29조 제4항의 콘텐츠의 변조 및 복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제37조 제1항 제8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가맹점의 일부를 변경하여 점포 내 점포(shop-in-shop) 형태 또는 점포 분할의 형태(한 호실을 가벽, 파티션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나누는 행위)로 별개의 매장을 만들어 본인이나 제3자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거나 점포를 시간적으로 분할하여 본인의 영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제3자로 하여금 동종 또는 이종 영업을 하게 하는 경우	제37조 제1항 제9호
○ 기타 가맹학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37조 제1항 제10호

당사가 귀하에게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즉시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7조 제2항 제1호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제37조 제2항 제2호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학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7조 제2항 제3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37조 제2항 제4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제37조 제2항 제5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	제37조 제2항 제6호

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37조 제2항 제7호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37조 제2항 제8호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37조 제2항 제9호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 가맹본사와 가맹학원사업자간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가맹계약서 기재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 및 계약 내용의 변경사항은 당사와 가맹학원사업자가 충분히 협의하여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 체결 이후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와 가맹학원사업자간 서면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의 개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7. 가맹학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학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학원운영권 환매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학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학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학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학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학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 가맹사업부 (1577-6167)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 승계를 인정하여 잔여기간에 대해 가맹학원 운영권이 승계 됩니다. 또한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 가맹계약을 맺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가맹학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학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학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학원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 → 당사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학원운영권 이전 완료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나 영업의 자격에 관해서는 본부의 승인을 요함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본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학원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 → 당사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학원운영권 대리행사 가능	.
업무위탁	본부 승인 시 가능	본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업무	가맹학원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 → 당사검토 → 업무위탁 가능 여부 통지 → 업무위탁 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에서 귀하가 하이스트학원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보습/입시학원	가맹학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허가 여부 통지→완료	문의 : 가맹사업부 (1577-6167)

※ 귀하는 계약기간 중 자신 및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허락없이 『 하이스트』와 동종 업종(타사 가맹학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배상 이외에 위약벌

로서 금 삼천만원(₩ 30,000,000)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하이스트학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는 지역 관할 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3일 이상 임의로 휴업할 수 없습니다.

특정일 또는 일정기간 동안 학원을 열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3일 전부터 학원 입구에 개시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정기간 휴업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학원(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10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학원(영업장)을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학원청결	담당자 학원 방문→청결도 확인→가맹학원 방문 기록표 작성→가맹학원사업자 확인 및 서명→완료	필요시	문의 : 가맹사업부 (1577-6167)
제품의 표준화	담당자 학원 방문→매뉴얼 준수 체크→가맹학원 방문 기록표 작성→가맹학원사업자 확인 및 서명→완료		
학원관리 프로그램사용	담당자 학원 방문→학원관리프로그램 사용상태 점검→가맹학원 방문 기록표 작성→가맹학원사업자 확인 및 서명→완료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학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하이스트학원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학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학원부담		
광고 전체 행사	브랜드 광고	광고비 50%	광고비 50% (각 가맹학원사업자 균등 분담)	광고 계획 공고→가 맹학원 부담액 통보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완납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가맹학원 모집광고	전액부담	없음		
판촉행사	상품판촉	기획비용	판촉물부수 내지 개수 별로 제작비용 부담	판촉 계획 공고→가 맹학원 부담액 통보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완납	본사의 사업에 손상을 끼칠 수 있는 광고활동 내지 판촉활동 금지
	팸플렛 등 제작				
	기타 개별행사	가맹학원사업자 부담			
할인카드, 소셜커머스 등	판촉	기획비용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을 균분하여 부담	가맹학원 부담액 통보→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완납	할인서비스 등의 종료 시 까지

※ 당사는 광고/ 판촉 종료 후, 광고/ 판촉 비용 중 잔여 금액이 있는 경우 각 가맹학원사업자에게 잔여 금액을 균분하여 환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2) 가맹학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학원사업자는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브랜드 이미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맹학원사업자가 개별광고 내지 개별판촉을 하고자 할 경우 당사는 가맹학원사업자가 실시하고자 하는 개별광고 내지 개별판촉을 기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가 광고 내지 판촉을 기획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학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 및 경영상 알게 된 당사의 영업상의 비밀을 가맹학원 운영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및 가맹학원 운영상 알게 된 당사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됩니다. 이 경우 귀하는 귀하의 피고용인, 가족, 기타 관계자 등에 의한 영업비밀 누설 행위에 대해서도 당해 행위자와 함께 공동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귀하는 당사의 허락 없이 교육 및 훈련 자료 기타 가맹학원운영과 관련하여 당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복사, 대여, 공개 등 일체의 누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비밀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가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손해배상 이외에 위약벌로서 **금 삼천만원(₩ 30,000,000)**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및 위약벌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가맹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당사 또는 당사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학원사업자가 가맹계약서상 경업금지 의무 또는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학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벌로서 **금 삼천만원(₩3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학원사업자가 가맹계약서상 자점매입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을 자점매입한 경우, 가맹학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벌로서 **금 삼천만원(₩3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Ⅵ.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학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학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 요 비 용
합 계	.	60일 내외	IV.가맹학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이전의 부담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60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매장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59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D-52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45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44	
가 맹 금 예 치	- 예치은행에 가맹금 예치	D-43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43	
교 육 실 시	- 3주 일정	D-43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38	
지 역 홍 보	- 학부모설명회 및 반배정 전형	D-15 ~ 개원전날	
개 원	- 수업 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학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당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가맹거래사나 변호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및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바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판촉인력 지원	판촉 행사에 필요한 인력지원	없음 (전 가맹점 해당)	가맹계약기간	소요되는 비용 전액 당사 부담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위하여 경영지도 요원 등을 파견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요원 등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사업부 (1577-6167)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설명	가맹점 부담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하이스트』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입문 교육	하이스트학원 운영에 대한 기본지식 및 프로그램 습득	실습교육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개업하기 이 전까지 이수하여야 함	필수 교육
심화 교육	상위과정 운영에 필요한 심화 프로그램(예:KMO 등)	실습교육 집단 강의	교육실시 1개월 전에 교육시간 및 장소 등을 통지	선택 교육

※ 입문교육은 반기별 최소 1회 이상, 심화교육은 연간계획에 의해 진행합니다.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비고
개원전 교육	협의	5,500	최초 계약시 이수
신입교사 교육	2일	55/인	부가세 별도
교사심화 교육	2일	110/인	부가세 별도

※ 신입교사교육과 심화교육은 실비수준입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사업자 및 가맹학원 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 할 경우 개원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학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이었던 직영점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이었던 직영점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이었던 직영점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별첨 1.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 2. 주요 품목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 3. 가맹학원사업자 현황]

가맹학원사업자 현황

No	매 장 명	대표자	전 화 번 호	주 소
1				
2				
3				
4				
5				
6				
7				
8				
9				
10				